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서영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571호)

2024.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기타재가급여 대상에 소프트웨어 명시 및 용어 변경	3

I. 개요

1. 서영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3571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서영석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4. 9. 3.
- (3) 회 부 일 : 2024. 9. 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산업의 디지털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지난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기반의 디지털 치료기기 1, 2호를 허가한 것에 이어 올해 3, 4호를 허가하면서 빠르게 디지털을 접목한 보건의료 분야의 시장과 기술변화에 대응하고 있음.

이러한 소프트웨어 기반의 디지털 제품들은 데이터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자들에게 매우 효과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으나 현재 제공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중 복지용구의 경우 수동휠체어,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등 여전히 하드웨어 중심으로만 운영되고 있고 소프트웨어는 등록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용구”라는 용어가 주는 하드웨어적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용

품”이라는 용어로 대체하고 소프트웨어도 단독으로 복지용품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들을 장기요양급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1호).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기타재가급여 대상에 소프트웨어 명시 및 용어 변경

가. 개정안의 내용

□ 현행법은 장기요양급여 중 기타재가급여 대상으로 수급자의 일상 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이하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규정상의 용어를 “용구”에서 “용품”으로 변경하고 소프트웨어가 포함됨을 명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
1. 재가급여	1. -----
가. ~ 마. (생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 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u>용구</u> 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바. ----- ----- ----- - <u>용품(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다)</u> 을 ----- ----- -----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나. 검토의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

재가급여 중 ‘기타재가급여’는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이하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¹⁾

- 이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고시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는 급여대상인 복지용구 품목(전동침대, 수동휠체어, 안전손잡이, 성인용보행기 등 18개 품목)에 관하여 열거하고 있으며²⁾,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바.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기타재가급여) 법 제23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기타재가급여는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2)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조(급여방식 및 급여품목) ③ 제1항에 따른 급여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입품목

가. 이동변기

나. 목욕의자

다. 성인용 보행기

라. 안전손잡이

마.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바. 간이변기(간이대변기·소변기)

사. 지팡이

아. 욕창예방방석

자. 자세변환용구

차. 요실금팬티

2. 대여품목

가. 수동휠체어

나. 전동침대

다. 수동침대

라. 이동욕조

마. 목욕리프트

바. 배회감지기

에 관한 고시”에서는 각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 건강보험공단은 재가급여 이용 수급자 1인당 연 160만원 한도로 (본인부담률 15%)³⁾ 복지용구 구입·대여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총 3,379억원의 복지용구 관련 기타재가급여가 지급되었음.

< 복지용구 품목별 연간 급여액 현황 >

(단위: 천원)

복지용구 품목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261,090,643	294,075,456	337,932,933
구입	이동변기	15,170,547	16,734,406	17,549,163
	목욕의자	13,949,598	15,403,486	17,381,454
	안전손잡이	27,829,950	32,777,575	41,531,474
	미끄럼 방지용품	21,922,628	20,972,354	25,947,629
	간이변기	308,921	329,315	342,437
	지팡이	5,065,719	5,584,671	6,558,333
	욕창예방방석	10,755,639	11,289,259	12,963,179
	자세변환용구	1,915,872	2,521,671	3,008,203
	성인용보행기	21,275,929	26,065,011	33,404,306
	요실금팬티	18,645,235	20,716,313	23,449,216
	경사로(실내용)	558,532	735,478	791,523
대여	수동휠체어	38,835,694	44,733,254	49,277,418
	전동침대	71,074,841	81,030,164	88,791,157
	수동침대	15,879	9,830	6,394
	이동욕조	183,914	185,408	169,497
	목욕리프트	-	-	-
	배회감지기	510,334	432,795	354,315
	경사로(실외용)	248,876	313,657	384,627
구입·대여	욕창예방 매트리스	12,822,537	14,240,809	16,022,610

자료 : 보건복지부

3. 구입 또는 대여품목
가. 욕창예방매트리스
나. 경사로(실내용,실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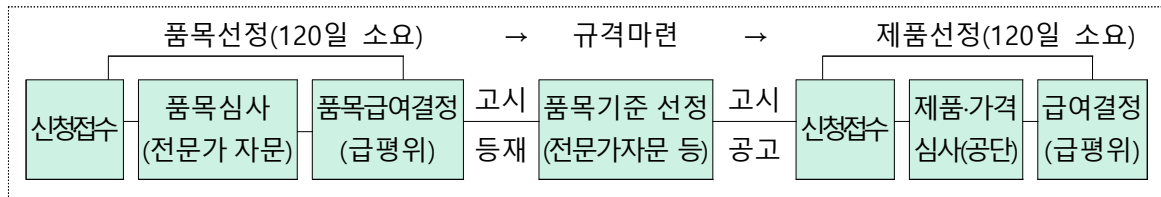
-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부담금) ① 제23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특별현금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이용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수준 등에 따라 본인부담의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본인부담금)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고시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여 기존 급여품목 외에 신규 품목에 대한 급여대상여부 결정 신청을 받고 있으며, ‘복지용구 품목심의 전문가회의’ 및 ‘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거쳐 급여여부를 결정하고 있음.⁴⁾

< 복지용구 신규 품목 등재 절차 >



자료 : 보건복지부

□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 신청 공고 시 태블릿PC, 사물인터넷(IoT) 기기와 같이 하드웨어에 내장된 소프트웨어 제품이 아닌 소프트웨어 단독으로만 운용되는 애플리케이션 등의 제품은 신규 급여신청을 제한한 바 있음.⁵⁾⁶⁾

이에 개정안은 최근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른 소프트웨어 기반의

4)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조(급여방식 및 급여품목)

④ 제3항에 따른 급여품목 외에 새로운 복지용구 품목의 급여를 원하는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에게 해당 복지용구의 급여품목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공단의 이사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수급자의 일상생활 지원에 필요한 품목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제9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평가 절차) ① 제2조제4항 및 제8조에 따라 품목 또는 제품의 급여대상여부 결정신청을 받은 공단의 이사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장관은 법 제45조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기요양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거친 후 정하여 고시한다.

1. 제2조 및 제8조에 따라 선정된 급여대상 품목 및 제품
2. 급여대상 제품의 가격

5) 국민건강보험공단, 2024년 상반기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신청(품목) 공고, 2024. 1. 29.

6)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하드웨어 기반의 내장된 소프트웨어 제품과 달리 응용 소프트웨어 단독 제품의 경우에는 당시 별도의 심사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신청을 제한했던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추후에는 소프트웨어 단독 제품에 대한 신청 제한을 두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디지털 제품들을 통해 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자들에게 효과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소프트웨어 단독 제품의 경우에도 급여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용구(用具)’라는 용어를 ‘용품(用品)’으로 바꾸고 기타재가급여 대상에 소프트웨어 제품이 포함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 현행법상 ‘용구(用具)’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을 하거나 만드는 데 쓰는 여러 가지 도구”를 의미하므로 현행 법률의 규정이 소프트웨어 단독 제품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해석되나,

최근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노인 건강관리·돌봄 등과 관련된 다양한 소프트웨어 제품이 출시·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복지용구 급여대상에 소프트웨어 제품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를 법률에 명시하여 규정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짐.

- 다만, ‘용구(用具)’와 ‘용품(用品)’의 사전적 의미⁷⁾를 살펴볼 때 두 용어 간 의미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이해되므로, 용어 변경의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7)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용구(用具)’는 ‘무엇을 하거나 만드는 데 쓰는 여러 가지 도구’를 의미하며, ‘용품(用品)’은 ‘어떤 일이나 목적과 관련하여 쓰이는 물품’을 의미함.

다.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 현행법의 규정으로도 소프트웨어 제품을 급여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므로 ‘용구’라는 용어는 현행대로 두되 소프트웨어가 포함됨을 추가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 관련 신기술 활용을 확대하려는 정책 방향성을 명시·선언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임.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복지용구 품목심의전문가회의’에서 신규품목의 급여 적합성 등을 심의하고 있으며 현행 법령하에서도 태블릿PC 등 하드웨어에 탑재된 형태의 소프트웨어 품목의 경우에는 신규급여 신청이 가능함. 다만, 소프트웨어 단독 제품의 경우 신체·인지기능이 저하된 장기요양 수급자 및 고령 가족 수발자 등의 사용·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태블릿PC 등 단말기 구입에 추가 비용이 소요되어 부담을 줄 우려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03